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7월 1일, 윤후덕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7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24.9.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및 소위원회부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19.)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6.) 상정, 의결(수정가결)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5.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후덕의원)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국가적 중대한 사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장인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이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삭제 및 제12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화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재판관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며, 궐위 또는 1개월 이

상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재판관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면서, 권한대행자의 선출방식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 ③ (생략) ④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신설>	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12조의2(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①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권한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권한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

현행	개정안
	<u>에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판관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u> <u>④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결과 피선거(被選者)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피선거로 하되,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피선거로 한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개정안에 대한 검토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순서를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일시 유고 또는 궐위 시 등의 권한대행자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시 유고 시의 대행)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제3조(결위 시 등의 대행) ① 헌법재판소장이 결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대행자는 제1항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본문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판관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결과 피선거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피선거자로 하되,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피선거자로 한다.

다른 헌법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① 국회의 경우 의장 직무대리나 임시의장 및 보궐선거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¹⁾, ② 대법원의 경우에도 대법원장이 결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²⁾.

이러한 헌법기관의 사례 및 법체계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1) 「국회법」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6조(보궐선거) 의장 또는 부의장이 결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결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법원조직법」 제13조(대법원장) ③ 대법원장이 결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보임.

다만,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출방식의 타당성 및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먼저, 개정안은 현행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와 궐위 또는 1개월 이상 사고(이하 “궐위등”이라 함)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선임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령상의 권한대행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헌법재판소장과 같이 헌법에 따라 임명절차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은 사고와 궐위를 구분하지 않고 선임자가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권한 대행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음.³⁾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므로(헌법 제114제2항) 비교의 대상에서 제외함.

헌법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임명절차에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헌법기관의 장의 권한대행자 순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취지는 업무공백으로 인한 혼란 등을 방지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안정성, 업무의 연속성 및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므로 위에서 언급한 다른 헌법기관의 기관장과 다소 차이는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권한대행의 취지 및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국회 동의 절차를 요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장만 다른 헌법기관의 기관장과 달리 일시 사고와 궐위등을 구분하여 궐위등의 경우에 권한대행자를 헌법재판관들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⁴⁾.

< 헌법기관 기관장 권한대행 입법례 >

구분	헌법 규정	권한대행 관련 법률 규정
감사원장 권한대행	헌법 제98조 ① 감사원 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	감사원법 제4조(원장) ①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③ 원장이 궐위(關位)되거나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4) 최선임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어 권한대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선임 헌법재판관이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임할 수 있다.	④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대 법 원 장 권한대행	헌법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조직법 제13조(대법원장)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각 호 생략)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조의2(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①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권한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권한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판관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결과 피선거자(被選者)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피선거자로 하되,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피선거자로 한다.

다음으로, 개정안과 같이 헌법재판소장 궐위등의 경우에 재판관회의를 통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의결정족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은 의결정족수를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하여 현행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이나 현행법상의 재판관회의의 의결정족수와 차이가 있음.

중전 법률에서는 재판관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를 개정안과 같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규정함에 따라 함께 임명된 다수의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동일 시점에 교체되는 등 재판관의 공석으로 재판관이 7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필수적 행정사무까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음.

이에 재판관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이 2022년 2월 이루어졌고⁵⁾,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의 의결정족수 역시 법률 규정에 맞추어 정비되었음.

5) 개정 조문대비표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8836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6조(재판관회의) ②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재판관회의) ②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개정안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대행자 선출의 의결정족수를 현행법상 의결정족수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 관계기관 의견

헌법재판소는 개정안의 내용은 헌법재판소규칙에 규정된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헌법재판소법에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체계의 균형상 적정하나, 개정안 제12조의2 제4항 중 재판관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부분은 2022. 2. 3.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16조 제2항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⁶⁾.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이성윤위원)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규칙에 규정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6)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13. 6. 13. 국회에 입법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을 제출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입장임.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출을 위한 재판관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법에 따른 재판관회의 의결정족수와 동일하게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정의결함.

6. 심사결과

수정의결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자 선출을 위한 재판관회의 의결정족수를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할 경우 임기만료 등으로 재판관 공석이 발생하여 재판관이 7명 미만이 되는 경우 권한대행자 선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현행 법률과 헌법재판소 규칙상 재판관회의 의결정족수와 동일하게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정함(안 제12조의2제4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의2제4항 중 “7명 이상”을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①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권한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권한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판관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결과 피선거자(被選者)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피선자로 하되,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피선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 ③ (생략) ④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 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u><신설></u>	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12조의2(헌법재판소장의 권한 대행) ① 헌법재판소장이 일시 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 소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 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 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 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권한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권한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판관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결과 피선거(被選者)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피선거로 하되,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피선거로 한다.